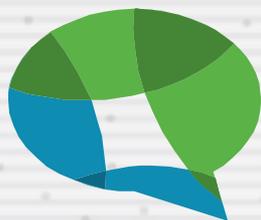




# GDPR 감독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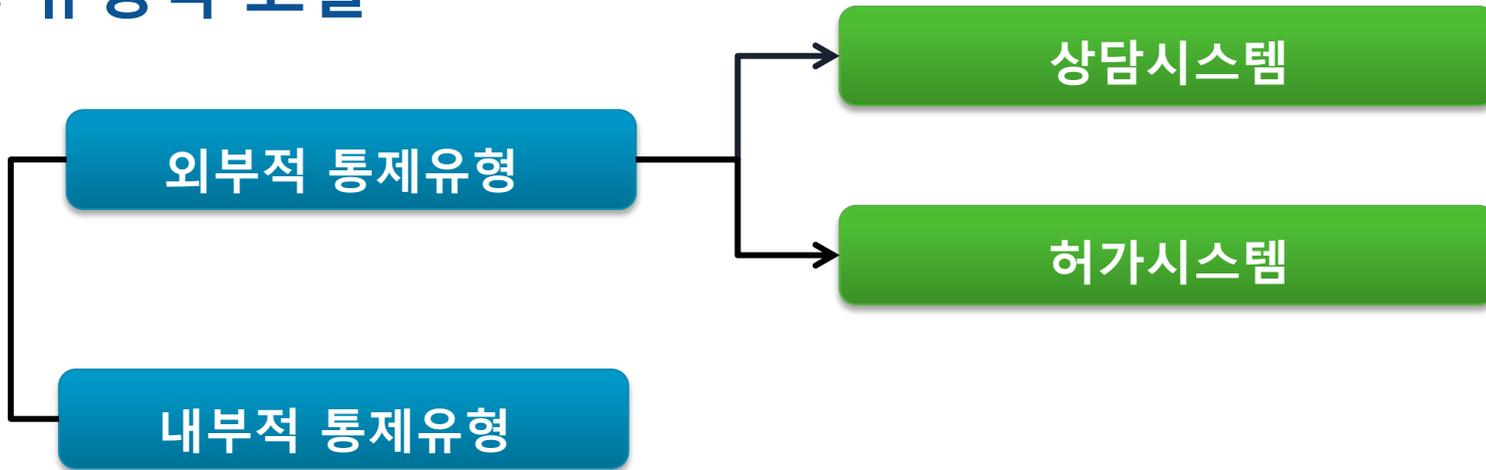
# 1. 개인정보보호기구의 헌법상 의의와 근거

- 개인정보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통제의 필요성

## I. 개인정보보호기구의 헌법상 의의와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의 정보처리를 통제하는 통제기관의 설치 및 활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 II. 유형적 고찰



### III.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판단기준과 내용

- 보호기구의 독립성보장
- 충분한 법적 권한의 보장
- 전문성확보
- 보호모델을 평가,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



## IV. 다툼이 없는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권한과 법적 지위

독립성  
보장

법적 권한

예방 권한

권고 및 이의제기 권한

조사 상담 및 조정권한

옴부즈만 기능

보고서 제출

기타: 국제협력



## 2. EU 지침상 감독기구 관련 내용

## EU 지침상 감독기구 관련 내용

**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동 지침에 의하여 회원국이 채택한 규정의 영토 내 적용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는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을 설치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으며, 당해 기관이 위임 받은 임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회원국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관한 행정적 조치 또는 규칙을 정하는 경우 감독기구와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동조 제3항에서는 감독기구가 보유해야 하는 권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각 회원국은 감독기구를 설치하면서 감독기구에 대하여 ① 처리작업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과 같은 조사권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 ② 제20조에 따라 처리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유효한 간섭권 그리고 당해 의견의 공표, 정보의 유통금지, 삭제 또는 폐기 명령의 공표, 처리의 잠정적·한정적 금지의 부과, 관리자에 대한 경고 또는 권고의 공표, 의회와 정치적 기관에 청원한 사항의 적절한 공표를 보장하는 유효한 간섭권, 그리고 ③ 이 지침에 따라서 채택된 국내 규정에 위반된 경우 법적 절차를 개시할 권한 또는 당해 위반을 사법기관에 소추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감독기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EU 지침상 감독기구 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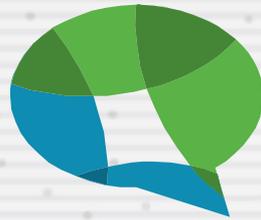
## I.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 : 95년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집행기능을 갖는 조직>

- ① 유럽집행위원회(The Commission),
- ② 개인정보보호작업반 (Working Party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 ③ 정보보호위원회(The Committee), 유럽이사회(The Council)
- ④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 II. 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집행체계

- ① 집행위원회
- ② 개인정보보호작업반
- ③ 정보보호위원회
- ④ 이사회와 유럽의회



### 3. GDPR 감독기구

# GDPR 감독기구

**새롭게 제정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이 발효될 경우,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집행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게 됨**

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의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이 폐지되고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 의해 설치된 유럽정보보호위원회(the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에 대한 것으로 해석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은 회원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대체하여 각 회원국 감독기구의 대표자와 유럽정보보호감독관으로 구성되는 유럽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일관성 있는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감독기구로 하여금 유럽정보보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와 협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 협력을 강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구체화하고 있음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유럽정보보호위원회가 작성하는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행위를 하는 한편,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을 취소하거나 집행위원회가 채택하고자 하는 위임행위에 대한 거부를 통해 그 효력을 좌우할 수 있고,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기능조약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권고와 결정을 채택할 수 있음

## I. 독립적 감독기관

- 각 회원국은, 유럽연합 내의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을 촉진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의 적용을 모니터링 할 책임 기관으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독립된 공공 부처를 두어야 함
- 각 독립기관은 유럽연합 내에서 이 규칙의 일관된 적용에 기여해야 함 이를 위하여 감독기관들은 서로 그리고 유럽위원회와 협력해야 함
- 한 회원국 내에서 감독기구가 다수일 경우 유럽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 회원국을 대표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일관성 체계를 보장할 감독기구를 회원국은 지명해야 함

## II. 독립성: 감독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서 권한행사와 의무 실행에 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하여야 함

- 감독기관의 구성원들은 이 규칙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외부의 영향이나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됨
- 감독기관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며, 재임 기간 중 영리여부를 불문하고 임무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 금지됨
- 각 회원국은 의무와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공간 및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 감독기관의 지시에만 따르는 독자적 직원을 선발하고 갖도록 보장
- 회원국은 감독기관을 감독기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정적 통제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에게 분리된 연간 국가예산(전체 이든, 일부이든)을 보장하여야 함

### III. 감독기관 구성원의 일반적 조건

- 1) 회원국은 감독기관의 구성원이 해당 회원국의 의회 또는 정부, 국가수반, 임명관련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독립된 기구에 의한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
- 2) 구성원은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그들의 의무와 권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 3) 감독기관 구성원의 의무는 재임 기간 만료, 사임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른 의무적 퇴직규정에 의해 종료
- 4) 구성원은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이거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더 이상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임

### IV. 감독기관 설치규정: 각 회원국은 법률에 의해,

- 1) 감독기관의 설립
- 2) 감독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
- 3) 감독기관 구성원의 임명을 위한 규정 및 절차,
- 4) 4년 이상 재임 기간 보장 및 재임명여부 관련 규정
- 5) 구성원과 직원 관련 금지행위 및 의무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함

## V. 임무와 권한

각 감독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부여 받은 권한을, 자신이 속한 회원국 내에서 행사함

;감독기관은 사법(司法)활동의 처리작용을 감독할 권한이 없음

### 1) 임무 - 감독기관은 그 영토 내에서,

- (a) 이 규칙의 적용 모니터링 및 보장
- (b) 개인정보처리 관련 위험, 규정, 보호, 권리들의 공적 인식과 이해의 증진
- (c) 처리 관련 자연인의 자유와 권리보호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들에 대하여 의회, 정부와 다른 기관들에 대한 자문
- (d) 관리자와 처리자의 이 규칙에 따른 의무인식 증진
- (e) 요청하는 즉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관련 정보제공 및 다른 국가의 감독기관과 협조
- (f) 정보주체와 단체, 기관의 이의제기를 처리하고, 조사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그 결과의 통지
- (g) 이 규칙의 적용 및 집행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다른 감독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협력
- (h) 다른 감독기관이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정보수령을 포함한 이 규칙의 적용 관련 조사 수행

- (i)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 및 상용화 등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발전을 모니터링
- (j) 제28조 제8항 등에서 언급되는 표준계약조항의 도입
- (k) 정보보호영향평가 관련 기준작성 및 유지
- (l) 제36조 제2항에서 언급되는 처리작용에 대한 자문
- (m) 제40조에 따른 행동강령 제정 장려 및 승인
- (n) 정보보호 인증체계, 마크, 씬 도입의 장려와 승인
- (o) 인증의 주기적 검토
- (p) 행동강령 모니터링을 위한 기구의 인증기준 작성 및 공표
- (q) 행동강령 모니터링을 위한 기구의 인증
- (r) 제46조 제3항에서 언급되는 계약조항 허가
- (s) 제47조에 따른 규정의 승인
- (t) 유럽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에 참여
- (u) 제58조 제2항에 따른 조치들과 이 규칙들의 위반에 대한 내부기록작성
- (v) 개인정보 보호관련 다른 임무의 이행 권한

## 2) 권한

### 다음과 같은 조사권을 가짐

- 감독기구권한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관리자나 처리자, 그 대표자에게 요구하고
- 인증검토 수행하고
- 이 규칙의 위반을 관리자 또는 처리자에게 통지하고
- 관리자나 통제자로부터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개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조사권
- 유럽연합이나 회원국 법률에 따라 정보처리시설이나 장비 등 관리자와 처리자의 시설에 접근할 조사권

### 다음과 같은 구제(교정)권을 가짐

- 이 규칙의 규정들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처리에 대한 관리자와 처리자에게 경고
- 이 규칙의 규정들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처리에 대한 관리자와 처리자에게 징계(견책)

- (적절한 경우에는) 특정 방법과 구체적 기간 내에 이 규칙 규정들에 부합하는 정보처리제공을 관리자 및 처리자에게 명령
- 정보주체에게 관리자가 개인정보침해를 통지하도록 명령
- 개인정보의 수정이나 삭제, 제16, 제17, 제18조에 따른 처리의 제한, 제17조 제1항과 제19조에 따라서 개인정보수령자에게 통지
- 처리금지를 포함한 잠정적이거나 최종적인 제한 명령
- 인증철회 및 인증기관에게 철회명령, 인증기관의 인증금지명령
- 행정벌 부과
- 제3국 또는 국제기구 내의 수령인에 대한 정보이동 중지

### 다음과 같은 허가 및 자문권을 가짐

- 제36조에 규정된 사전 자문의 준수 관련 관리자 자문
- 독자적으로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 국회, 정부, 기관, 공중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이슈에 관한 의견 제출
- 제36조 제5항에서 언급되는 처리의 허가
- 제40조 제5항에 따라 행동강령초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승인
- 제42조 제5항에 따른 인증 및 인증기준 승인

- 제28조 제8항에서 언급되는 표준계약조항의 도입
  - 제46조 제3항에서 언급되는 계약조항의 허가
  - 제46조 제3항 (b)에서 언급되는 administrative arrangements의 허가
  - 제47조에 따른 승인
- 
- 감독기구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법절차와 적법절차 등을 포함한 적절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감독기관은 이 규칙의 집행 및 위반에 관하여 법적 절차에 관여하거나 사법기관에 제소할 권한을 가짐
  - 활동 보고서
    - 각 감독기관은 그들의 활동에 관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VI. 협력 및 일관성

### 1) 협력

#### 상호지원

- 감독기관들은 이 규칙의 일관성 있는 시행과 적용을 위하여 상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과의 효과적 협력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상호 지원의 범위에는 특히, 사전 승인 및 자문 요청, 조사와 사안의 개시에 관한 신속한 정보 등과 같은 정보 요청 및 감독 조치가 포함됨
- 감독기관의 공동 수행
- 협력과 상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은 다른 감독기관의 지정된 구성원 또는 직원의 참여 하에, 공동 조사, 공동 집행 조치 및 그 밖의 다른 공동 업무를 수행함

### 2) 일관성

- 유럽연합 내에서 이 규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하여 감독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함

## VI. 협력 및 일관성

### ■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 감독기구가 정보보호영향평가를 위한 처리작용 목록을 채택하고자 할 때
  - 행동강령초안이나 개정이나 확대가 이 규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때
  - 인증기구나 인증기구를 위한 기준을 승인하고자 할 때
  - 제46조 제2항과 제28조 제2항에서 언급된 표준정보보호조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
  - 제46조 제3항 a에서 언급된 계약조항을 허가하고자 할 때
  - 제47조 의미 내에서 구속력있는 규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
- 의견을 표명해야 함

### ■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 제60조 제4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관련 감독기구가 합리적 반대를 제기하거나
  - 감독기구간 의견이 충돌하거나,
  - 감독기구가 제64조 제1항에서 언급된 경우에서 유럽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지 않거나 감독기구가 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 구속력 있는 결정을 채택해야 함

## VII. 유럽정보보호위원회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각 회원국 감독기관의 장과 유럽정보보호 감독관 또는 그들의 대표로 구성

유럽위원회는 유럽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 모임에 투표권 없이 참여할 권리가 있음

**1) 독립성** : 유럽정보보호 위원회는 제70와 제71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거나 임무를 수행 할 경우 독립적으로 행하여야 함

### 2) 임무

- 유럽정보보호 위원회는 이 규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보장하여야 함
-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또는 유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국가의 감독기관의 임무를 해침이 없이 제64조와 제65조에 규정된 경우에 이 규칙의 올바른 적용을 모니터하고 보장하고, 이 규칙의 개정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안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에 자문하고 일관성체계에서 다루어진 문제에 대한 감독기구와 법원이 다른 결정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전자적 기록소를 유지해야 함

## VII. 유럽정보보호위원회

**3) 보고서** : 유럽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 내 그리고 관련되는 경우 제 3국과 국제조직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자연인의 보호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의회와 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함

### 4) 절차

유럽정보보호 위원회는 그 구성원 단순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함.  
위원회 절차개정에 관하여는 2/3 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함

**5) 위원장** :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구성원 중에서 단순 다수결로 1인의 위원장과 2인의 부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재임 기간은 5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 VIII. 구제, 책임 및 제재

### 1) 감독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 행정적 또는 사법적 구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정보주체는 그들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각 회원국 내의 감독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짐
- 감독기관은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 감독기관을 상대로 한 효율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 행정적 또는 사법적 구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자연인 또는 법인은 감독기관이 자신에 대하여 내린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
- 행정적 또는 사법적 구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권한 있는 감독기관이 이의 제기의 결과 또는 진행 상황에 관하여 3개월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는 각 정보주체는 효율적 사법구제에 관한 권리를 가져야 함
- 감독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해당 감독기관이 설립된 회원국의 법원에 제기되어야 함

## 2) 효율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제77조에 규정된 감독기관에의 이의 제기 권리를 포함하여, 비사법적 또는 행정적 구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자연인은 그들의 개인정보 처리 결과 이 규칙에 따른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짐

### 정보주체의 대표

- 정보주체는 제77~79조의 권리들과 배상 받을 권리행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음
- 회원국은 정보주체의 위임과는 상관없이 제77~79조에 따라 감독기구에 이의제기 할 권리를 위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이 갖도록 할 수 있음

## 3) 배상을 받을 권리 및 책임

- 이 규칙의 침해의 결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받은 손해에 관하여 관리자 또는 처리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관리자 및 처리자는 그가 이러한 손해를 야기한 사안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이러한 책임에서 면제

# VIII. 벌칙

## 1) 행정적 제재

- 각 감독기관은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행정적 제재는 각 개별 사안에 따라 효과적이고, 적정하며 억제 가능한 것이어야 함.
- 행정적 제재의 부과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는
  - 관련 정보주체의 규모와 손해수준은 물론 처리의 범위와 목적을 고려한 위반의 본질, 중대성, 기간
  -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
  - 정보주체의 손해를 완화하기 위한 관리자나 처리자의 행동
  - 제25조와 제32조에 따라 관리자나 처리자에게 부과된 기술적·조직적 조치들을 고려한 관리자나 처리자의 책임정도
  - 관리자나 처리자의 과거 위반여부
  - 침해결과를 완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하여 감독기관과 협조한 정도(수준)
  - 침해가 야기한 개인정보의 분류
  - 침해방법과 정도, 통지여부
- 등을 고려해야 함

## VIII. 벌칙

-감독기관은 아래 규정 위반시 1000만 유로 이상 또는 기업의 경우 연간 세계 수입의 2% 이상 벌금으로 부과하여야 함

관리자나 처리자가 제 8, 11,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2, 43조 의무

제42조와 제4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의무

제41조 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의 의무

-감독기관은 아래 규정 위반시 2000만 유로 이상 또는 기업의 경우 연간 세계 수입의 4%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하여야 함

동의조건을 포함하여 제5, 6, 7, 9조에 따른 기본적인 처리원칙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정보주체 권리

제44조에서 제49조에 따른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수령자로 개인정보이전

제4장 하에서 채택된 회원국 법률에 따른 의무

제58조 제2항에 따라 감독기관에 의한 정보이동의 정지나 일시적이거나 최종적인 처리제한명령의 비준수 또는 제58조 제1항 위반 시 접근제공 불이행

-제58조 제2항에서 언급된 것처럼 감독기관에 의한 명령 비준수는 2000만 유로 이상 또는 기업의 경우 연간 세계 수입의 4%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하여야 함

## 2) 형사벌

- 회원국은 행정적 제재에 속하는 않는 위반의 경우에 특히 이 규칙의 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벌칙을 제정하여야 하고, 규정된 벌칙은 효과적이고, 적정하며 억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3) 특수한 정보처리 상황 관련 규정들

### 처리와 표현 및 정보자유

- 회원국은 이 규칙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와 표현 및 정보자유권을 조화(정)시켜야 함
  - 저널리즘목적, 연구와 문학(저작)목적을 위한 처리의 경우에는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의 적용 배제
- 처리와 공적 기록(문서)에 접근 : 두 권리의 조화 필요

### 개인식별번호 처리

- 개인식별번호나 일반적 개인식별자를 사용하는 회원국은 이를 이 규칙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적절한 보호 하에서만 사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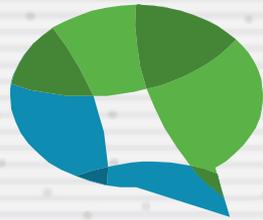
## 고용관계에서 처리

- 이 규칙의 제한 범위 내에서, 회원국은 고용관계 내의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 특히 개인별 또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의무의 면제, 경영, 근로 계획 및 조직, 사업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근로와 관련한 권리와 혜택의 실현 및 향유, 그리고 고용관계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채용, 고용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 처리를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 규칙을 법령에 의해 채택할 수 있음
- 공익이나 과학적, 역사적 목적이거나 통계목적의 위한 보관목적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보호 : 적절한 보호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전제로 양자의 조화필요

## 비밀유지의무규정

### 교회 및 종교단체에서 정보보호

- 이 규칙의 시행일에 회원국 내 교회 및 종교 단체 또는 공동체가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개인 보호 관련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규칙들이 이 규칙에 벗어남이 없는 한 지속적인 적용이 가능함
- 제1항에 부합하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교회 및 종교 단체는 이 규칙의 제6장에 따라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설립을 규정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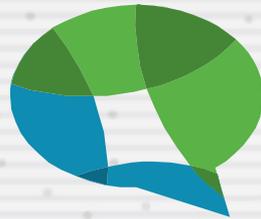
## 4. 결론

# I. 결론

1.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유럽이며, 특히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들이 매우 중요함
2.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유럽정보보호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위치
3.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감독기구(supervisory authority)가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의 일차적인 집행기관으로 기능하게 될 것

# I. 결론

4.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은 각 회원국이 감독기구의 설치 및 활동을 통하여 동 규칙의 집행에 관해 일정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강화·확대되는 유럽통합의 흐름 속에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전역에 걸친 하나의 법과 통일된 집행체계를 추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적어도 집행체계에 관한 규칙의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5.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기치 아래 모든 영역에서의 강력한 통합을 추구해 온 유럽연합의 특수한 성격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
6. 유럽연합 회원국과 무역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나 형성하고자 하는 국가는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칙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동 규칙상의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역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규범이 될 것임



## 5. 우리나라 법제현황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의결
- 법·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심의·의결
- 공공기관 간 의견조정 사항 심의·의결
-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심의·의결
-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심의·의결
- 법령·조례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심의·의결
- 개인정보처리정지, 침해행위중지 권고에 관한 심의·의결
- 징계, 고발,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결과공표에 관한 심의·의결
- 연차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심의·의결
- 대통령, 위원장,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p style="text-align: center;"><b>행정안전부</b> <b>(집행·총괄 기능)</b></p>	<p style="text-align: center;"><b>중앙행정기관</b> <b>(소관분야 및 개별법에 따른 집행업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문별 기본계획, 시행계획 작성지침 제정·배포</li> <li>▪ 기본계획의 수립(취합) 및 통보</li> <li>▪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li> <li>▪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의 제정·권고</li> <li>▪ 개인정보열람창구 구축·운영</li> <li>▪ 개인정보유출신고제도 운영</li> <li>▪ 개인정보파일 등록 접수 및 현황 공개</li> <li>▪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시책</li> <li>▪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리·운영</li> <li>▪ 법위반행위 조사, 시정권고 및 명령, 과태료 부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분야 시행계획 수립</li> <li>▪ 소관분야 법령 등 개선</li> <li>▪ 소관분야 자율규제 촉진·지원</li> <li>▪ 법 위반행위 조사, 시정권고명령, 과태료부과</li> <li>▪ 법령·조례의 개인정보보호법 목적에 부합 노력 등</li> </ul>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p>&lt;심의.의결&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li> <li>2. 정책, 제도,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li> <li>3. 공공기관간 의견조정</li> <li>4. 법령 해석.운용</li> <li>5.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li> <li>6.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행안부장관의 의견제시</li> <li>7. 법령.조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권고</li> <li>8.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에 대한 조치권고에 관한 사항</li> <li>9. 개선권고, 시정명령.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안부장관의 처리결과 공표</li> <li>10. 연차보고서 작성.국회 제출</li> <li>11. 대통령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li>12.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계획 수립.시행</li> <li>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li> <li>3. 자율규제 촉진.지원 시책</li> <li>4. 고유식별정보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정비, 계획수립,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 마련</li> <li>5.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제정 및 권고</li> <li>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접수 및 현황 공개</li> <li>7.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및내용에 대한 개선권고</li> <li>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접수</li> <li>9.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li> <li>10. 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li> <li>11. 영향평가 전문가육성, 평가기준 개발보급 등</li> <li>12.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접수 및 기술 지원</li> <li>1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및 위원장 임명</li> <li>14.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li> <li>15. 법령 또는 조례에 대한 의견제시</li> <li>16.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권고</li> <li>17.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설치운영</li> <li>18.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li> <li>19. 시정조치명령(침해중지, 개인정보처리 일시정지 등)</li> <li>20. 고발 및 징계권고</li> <li>21. 법위반사실 등 결과 공표</li> <li>22. 과태료 부과</li> </ol>
<p>·심의.의결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p>	<p>·기본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p>

## II. 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과 기능변화

구분	주요 개정내용 (보호법 규정)	시행일
위원회 기능 강화	사실조회 요구 및 관계기관의 의무 명시 (법 §8②·③)	즉시 시행
	정책제도 개선 권고 및 이행여부 점검 (법 §8④·⑤)	즉시 시행
	위법행위 인지도 관계기관에 조사 요구 (법 §63④)	즉시 시행
	<b>법령상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도입 (법 §8①, §8의2)</b>	공포 후 1년
	<b>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법 §9, §11①)</b>	공포 후 1년
	<b>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이관 (법 §40)</b>	공포 후 1년
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책임 감경규정 삭제 (법 §39③)	공포 후 1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 §39③·④)	공포 후 1년
	법정 손해배상제도 (법 §39의2)	공포 후 1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의 '변조'를 '위조·변조'로 변경 (법 §25⑥, §26④, §29)	즉시 시행
	행정부장관의 실태조사 및 합동 실태점검 (법 §11②, §63⑦)	즉시 시행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도입 (법 §32의2)	공포 후 1년
벌칙 등 제재 강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 제공한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 및 1억 이하 벌금 (법 §70제2호)	즉시 시행
	보호법 위반시 2천만원으로 벌금 상향 (법 §73)	즉시 시행
	불법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법 §74의2)	즉시 시행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법 §75②제4호의3)	'16.1.1 시행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허위 표시·홍보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법 §75②제7호의2)	공포 후 1년

### III.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규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I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 1. 민사적 제재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시행일 : 2016.7.25.] 제39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시행일 : 2016.7.25.]

## 2. 행정적 제재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6., 2014.3.24., 2015.7.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형사적 제재

### 4.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점과 정비방안

#### -독립성 미확보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및 위원에 관하여는 독립적 활동의 보장에 관한 그 어떤 규정도 찾아볼 수가 없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예산 편성 및 인사와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가 독립적인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갖도록 해야 함

###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현재와 같은 위원회 형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형태의 개인정보보호기구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을 지니고 있음. 이에 대한 체계화, 명확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구의 통폐합문제는 차기 정부의 IT 관련 정부기구 개편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임

## 6. 적용범위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는 이 법률이 요구하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곧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른 가치 및 원리들과 충돌되는 일정한 경우들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어 만들어진 것

-비교법적으로 EU 개인정보보호지침, 독일 연방정보보호법,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영국 정보보호법 등에도 순수하게 私的인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 등이 규정됨

- 1990년대에 제정된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처럼 적용배제의 사유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반면, 최근에 제·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은 적용제외의 사유와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는 적용제외의 범위, 대상 등이 분명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아 적용배제라는 원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음



**Thank YOU!**